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준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252

발의연월일: 2021. 7. 1.

발 의 자: 강준현·강선우·김민석

김승원 • 문정복 • 박성준

소병훈 • 이성만 • 최종윤

홍성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하여 생활비용의 보조 등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2020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9년 주민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으로 총 858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고, 이 중 일부분만이 생활비용 보조, 노후주택 개량 등 개발제한구역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으로 집행되었으며 예산의 대부분은 공원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집행되었음.

이에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보조 등을 위한 직접 지원사업의 우선적 시행을 노력하도록 함으로써,

주민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 및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고,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제16조제1항).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제1호 중 "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"을 "삶의 질 향상을"로, "지원사업"을 "사업으로서 각 목의 지원사업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가목의 사업을 우선 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가.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
- 나.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여가활동이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녹지, 경관, 숲길 조성 등을 위한 지 원사업
- 다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주민지원사업 등) ① 시ㆍ	제16조(주민지원사업 등) ①
도지사 및 시장・군수・구청장	
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	
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	
1.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<u>생활편</u>	1
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	<u> 질 향상을사업으로서</u>
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	각 목의 지원사업. 이 경우 시
업 <후단 신설>	<u>·</u> 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
	청장은 가목의 사업을 우선적
	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
	<u>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가.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</u>
	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
	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
	한 지원사업
<u><신 설></u>	나.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여
	<u>가활동이나 개발제한구역</u>
	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
	될 수 있는 녹지, 경관, 숲
	길 조성 등을 위한 지원사
	<u>업</u>
<u><신 설></u>	다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
	이 인정하는 사업
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